#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03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윤건영·차지호·이해식

김영배 · 서영석 · 채현일

소병훈 • 이인영 • 민병덕

임호선 • 한병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 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4.1.28. 2012헌마43)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무산되었음

이에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법률 제 호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		
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		
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		
<u>भ</u>	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		
	<u>지 못한 때</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